



**[2010.9.11 경찰채용시험 형법 문제와 해설] <합샘>**

- \* 총론; 7문제, 각론; 13문제
- \* 판례; 17문제, 조문; 3문제
- \* 해설; 합승한 형법올리기(총론 2011년판, 각론; 20010년판) → **1개의 지문 제외**한 100%적중
- \* 각론 페이지 인용은 개정판(2011년판)의 페이지로 적기합니다.

1. 다음은 판례의 태도를 기술한 것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0. 일경]

㉠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 공동가공의 의사를 그 객관적 요건으로 하며 이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적임을 요하나 이는 상호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사전에 어떤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 2인 이상이 상호의사의 연락 없이 동시에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인에 대하여 그 죄를 논하여야 하나 ㉢ 그 결과 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자를 기수범으로 처벌하고, ㉣ 이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특히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고 그 결과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단(동시범)하는 것이므로 ㉤ 공범관계에 있어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면 이에는 동시범 등의 문제는 제기될 여지가 없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해설>

㉠ × : 객관적 요건 → 주관적 요건 <총p.367>

㉡ × : 기수범 → 미수범 <총p.384>

※ [1]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 공동가공의 의사를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하며 이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적임을 요하나 이는 상호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사전에 어떤 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2인 이상이 상호의사의 연락 없이 동시에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인에 대하여 그 죄를 논하여야 하나 그 결과 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자를 **미수범**으로 처벌하고(독립행위의 경합), 이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특히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고 그 결과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단(동시범)하는 것이므로 공범관계에 있어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면 이에는 도시 동시범 등의 문제는 제기될 여지가 없다(대판 85도1892).

<답> ②

2. 다음 중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죄는 무엇인가? [10. 일경]

- ① 사문서부정행사죄(형법 제236조)    ② 사인위조죄(형법 제239조)  
 ③ 공문서부정행사죄(형법 제230조)    ④ 공인위조죄(형법 제238조)

<해설>

① × : 문서에 관한 죄 중 **사문서부정행사죄**만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총p.307>

<답> ①



3.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10. 일경]

- ①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②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③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의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함은 각 법조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한 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새겨야 한다.
- ④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에 있어서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해설>

- ①② ○ :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0도1899). <총p.425>
- ③ ○ : 대판 2005도8704 <총p.454>
- ④ × :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 있어서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대판 2002도6033). <총p.426>

<답> ④

4. 다음은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0. 일경]

- ㉠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 ㉡ 甲은 乙이 교사로 근무하는 학교법인 이사장 앞으로 “乙은 전과 6범으로 교사직을 팔아가며 이웃을 해치고 고발을 일삼는 악덕교사이다.”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 경우 甲에게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 ㉢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사자명예훼손죄는 ‘비방할 목적’을 그 구성요건으로 한다.
- ㉣ 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 ㉤ 국립대학교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 내에서 제자인 여학생을 성추행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지역 여성단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소식지에 게재한 행위는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해설>

- ㉠ × :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는 **친고죄**이다(제312조). <각p.120>



- ㉞ × : 중학교 교사에 대해 “전과 6범으로서 교사직을 팔아가며 이웃을 해치고 고발을 일삼는 악덕 교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그가 근무하는 학교법인 이사장 앞으로 제출한 행위 자체는 위 진정서의 내용과 진정서의 수취인인 학교법인 이사장과 위 교사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83도2190). <각p.125⑥>
- ㉟ × : 사자명예훼손죄는 목적범이 아니다(제308조). <각p.137>
- ㊱ ○ : 대판 2002도7420 <각p.126>
- ㊲ ○ : 대판 2003도2137 <각p.135①>
- <답> ②

5.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10. 일경]

- ①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 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② 출입문이 열려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 ③ 은행강도 범행으로 강취할 돈을 송금받을 계좌를 개설한 것만으로는 범죄수익 등의 은닉에 관한 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④ 입영대상자가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병원으로부터 허위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면 이러한 행위만으로도 구 병역법 제86조에 정한 '사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해설>

- ① ○ : 대판 77도1802 <총p.319⑩>
- ② ○ : 대판 2006도2824 <총p.317>
- ③ ○ : 대판 2005도3065 <총p.323㉞>
- ④ × : 입영대상자가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병원으로부터 허위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사위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5도3065). <총p.323㉞>
- <답> ④

6.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10. 일경]

- ①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경우, 이미지 파일은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법원이 이혼의사확인서등본 뒤에 이혼신고서를 첨부하고 간인하여 교부하였는데 당사자가 이를 떼어내고 다른 내용의 이혼신고서를 붙여 호적관서에 제출한 경우,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만이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컴퓨터의 기억장치 중 하나인 ‘램(RAM)에 올려진 전자기록’은 형법 제232조의2의 사전전자기록 위작·변조죄에서 말하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



당한다.

<해설>

① × :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경우,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이미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행사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대판 2008도 5200). <각p.548>

② ○ : 대판 2006도7777 <각p.506>

③ ○ : 대판 2003도7762 <각p.525>

④ ○ : 대판 2000도4993 <각p.544>

<답> ①

7.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10. 일경]

①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그 사업 참여로 인하여 이득을 얻은 때로 보아야 한다.

② 사전수뢰죄(형법 제129조 제2항)에서 청탁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직무행위를 할 것을 의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직무행위가 부정한 것인가 하는 점은 묻지 않는다.

③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④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공개된 장소에서 금품을 수수한 후 이를 부하직원들을 위하여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그 뇌물성이 부인되지 않는다.

<해설>

① × :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한다(대판2002도3539). <각p.616>

② ○ : 대판 99도1911 <각p.624>

③ ○ : 대판 2003도1060 <각p.611>

④ ○ : 대판 83도2050 <각p.614①>

<답> ①

8.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10. 일경]

①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②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③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



행에 공동가공한 것이라면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④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행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

<해설>

- ① ○ : 대판 2008도89 <총p.374>
  - ② ○ : 대판 2008도1274 <총p.379>
  - ③ × :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범자간에 사전에 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하더라도 공동정범은 성립된다(대판 82도1373). <총p.370>
  - ④ ○ : 대판 2006도1623 <총p.374>
- <답> ③

9. 다음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0. 일경]

- ① 퇴거불응죄의 법정형은 주거침입죄와 동일하다.
- ② 형법상 퇴거불응죄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 ③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경우, 위 판결 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④ 주거침입죄는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해설>

- ① ○ : 제319조 제2항 <각p.192>
  - ② ○ : 제322조 <각p.192>
  - ③ × :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경우, 위 판결 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판 2007도11322). <각p.191>
  - ④ ○ : 대판 94도2561 <각p.188>
- <답> ③

10. 다음 중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규정으로 틀린 것은? [10. 일경]

- ①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 ②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별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③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한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별하지 아니한다.



④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해설>

① ○ : 제11조 <총p.271>

② ○ : 제13조 <총p.140>

③ × :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제15조 제2항). <총p.177>

④ ○ : 제17조 <총p.126>

<답> ③

11.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0. 일경]

- ㉠ 사망한 자를 상대로 제소할 경우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 ㉡ 중고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회사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남아 있음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 ㉢ 자동차 명의신탁관계에서 자동차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나아가 자신의 소유라는 말을 하면서 자동차를 제3자(매수인)에게 매도하고 이전등록까지 마쳐준 경우, 매수인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점유의 권원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고 그 진정성립 등에 관한 위증을 교사하는 등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등기까지 한 경우 사기죄를 구성한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해설>

㉠ ○ : 대판 2000도1881 <각p.295⑦>

㉡ × : 중고 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98도231). <각p.274②>

㉢ ○ : 대판 2006도4498 <각p.225>

㉣ ○ : 대판 96도1405 <각p.288⑤>

<답> ②

12.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10. 일경]

- ① 피고인이 기왕에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타인에게 속한 자기명의의 유가증권에 무단히 변경을 가하였다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이 수표의뢰인으로부터 수표자금을 입금받지 아니한 채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경우,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④ 은행을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약속어음에 있어서는 발행인이 그 발행을 위하여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닌 발행인의 다른 인장을 날인한 경우,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한다.

<해설>

- ① ○ : 대판 2002도4935 <각p.552>
- ② ○ : 대판 79도3034 <각p.489>
- ③ ○ : 대판 2005도4528 <각p.494⑤>
- ④ × : 은행을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발행을 위하여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닌 발행인의 다른 인장을 날인한 경우, 그것이 발행인의 인장인 이상 그 어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00도883). <각p.494④>

<답> ④

13.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10. 일경]

- ① 남편의 간통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상간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의사가 모발이식 시술을 하면서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모발이식 시술행위 중 일정 부분을 직접 하도록 맡겨둔 채 별반 관여하지 않은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조산사가 산모의 분만 과정 중 별다른 응급상황이 없음에도 독자적 판단으로 산모에게 포도당이나 옥시토신을 투여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죄가 인정된다.
- ④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한방의료 행위인 침술행위를 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해설>

- ① ○ : 대판 2003도3000 <총p.258③>
- ② ○ : 대판 2005도8317 <총p.248②>
- ③ ○ : 대판 2005도9670 <총p.248③>
- ④ × :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관리자로부터 대체의학자격증을 수여받은 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침술원을 개설한 경우, 국가의 공인을 받지 못한 민간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3도939). <총p.292①>

<답> ④

14.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10. 일경]

- ① 지하철에서 승객이 놓고 내린 전동차 바닥이나 선반 위에 있던 물건을 승무원이 현실적으로 발견하기 전에 제3자가 가지고 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 ② 결혼예식장에서 신부 측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가 축의금을 내어놓자 이를 교



부받아 가로챈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 ③ 자신 명의의 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경우, 컴퓨터 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 ④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는 이것을 영득함에 기망행위를 한다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해설>

- ① × :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대판 99도3963). <각p.206>
- ② × : **절도죄**에 해당한다(대판 96도2227). <각p.228③>
- ③ × : **횡령죄**가 성립한다(대판 2005도5975). <각p.332①>
- ④ ○ : 사기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그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므로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는 이것을 영득함에 기망행위를 한다 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횡령죄**만을 구성한다(대판 87도2168). <각p.353>

<답> ④

15.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10. 일경]

- ①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사람이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력으로 자신을 체포하려고 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②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제1항)에 있어서의 범의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상대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한다.
- ③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 ④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해설>

- ① ○ : 대판 2006도148 <각p.638>
- ② × :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판 94도1949). <각p.644>
- ③ ○ : 대판 2001도6349 <각p.647>
- ④ ○ : 대판 2003도1609 <각p.648>

<답> ②

16.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10. 일경]

- ① 강간죄에 대한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는 그 수단인 폭행만을 분리하여 따로 처벌할 수 없다.



- ② 강간치상죄에 대한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③ 강제추행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 ④ 유부녀인 피해자에 대하여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해설>

- ① ○ : 대판 2002도51, 전합 <각p.99>
- ② × : 강간치상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유무나 그 취소여부는 공소제기의 요건이나 효력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며 고소의 취소가 있었다고 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대판 88도1212). <각p.107>
- ③ ○ : 대판 94도630 <각p.101>
- ④ ○ : 대판 2006도5979 <각p.101>

<답> ②

17. 재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0. 일경]

- ① 강도죄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손괴죄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된다.
- ②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심문기일소환장은 형법상 재물에 해당하지 않지만, 주권포기각서는 그 경제적 가치가 있어 재물성이 인정된다.
- ③ 민법상의 점유보조자라도 그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보관의 주체로 볼 수 있다.
- ④ 피고인이 피해자의 도장을 피해자의 책상서랍에서 몰래 꺼내어 가서 그것을 차용금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찍고 난 후 곧 제자리에 넣어둔 경우, 도장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해설>

- ① × : 친족상도례는 재산죄 중 **강도죄·손괴죄·강제집행면탈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각p.219>
- ② × : [1]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심문기일소환장**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서 형법상 재물에 해당한다(대판 99도5775). <각p.200②> [2] **주권포기각서**는 주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처분문서로서 그 경제적 가치가 있어 재물성이 있다(대판 95도2747). <각p.200③>
- ③ ○ : 대판 81도3396 <각p.208>
- ④ × :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그의 책상서랍에서 몰래 꺼내어 가서 그것을 차용금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찍고 난 후 곧 제자리에 넣어둔 사실만으로는, 위 도장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대판 87도1959). <각p.213⑦>

<답> ③

18. 형법 규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0. 일경]

- ① 범인도피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한 경우 성립한다.
- ② 특수도주죄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단순도주죄(형법 제145조 제1항)를 범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다.

- ③ 모해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④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인도피죄(형법 제155조 제2항)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해설>

- ① ○ : 제151조 제1항 <각p.667>
- ② ○ : 제146조 <각p.665>
- ③ ○ : 제153조 <각p.683>
- ④ × :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제155조 제4항). <각p.687>

<답> ④

19. 다음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0. 일경]

- ㉠ 불을 놓아 전봇대 주변에 놓인 무주물(쓰레기)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그 무주물은 자신의 물건이 아니므로 형법 제167조 제1항(타인소유 일반물건방화죄)을 적용하여 처벌하여야 한다.(자기소유)
- ㉡ 집에 불을 놓아 현주건조물방화죄가 기수에 이른 후 동 건조물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을 막아 소사케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 농촌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의 배수관(소형 PVC관)을 토사로 막아 하수가 내려가지 못하게 한 경우 형법상 수리방해죄가 성립한다.(수리이익이 없는 경우임)
- ㉣ 형법에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과실일수죄를 범한 자를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 ㉤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사용하던 가스설비의 휴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를 간 후 가스공급을 개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주밸브가 열려져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폭발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 ㉠ × : 불을 놓아 무주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무주물’을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형법 제16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하여야 한다(대판 2009도7421). <각p.455>
- ㉡ ○ : 대판 82도2341 <총p.179>
- ㉢ × : 수리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2001도404). <각p.464>
- ㉣ × : 과실일수죄는 단순과실만 처벌한다(제181조). <각p.463><총p.162>
- ㉤ ○ : 대판 99도5086 <총p.131㉡>

<답> ③



20.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10. 일경]

- ①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은 형법상 중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② 길이99cm, 두께8cm의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번 강타하고, 피해자가 비틀거리며 쓰러졌음에도 계속하여 더 세게 머리를 2번 때려 피해자가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 등으로 사망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
- ③ 7세, 3세 남짓 된 어린 자식들에게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으로 따라 들어오게 하여 어린 자식들을 익사하게 한 경우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
- ④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에게 상습존속폭행죄와 상습존속상해죄가 각각 별도로 성립한다.

<해설>

- ① ○ : 대판 2005도7527 <각p.23>
- ② ○ : <교재>
- ③ ○ : 대판 86도2395 <각p.15>
- ④ × :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상해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대판 2002도7335). <각p.24>

<답> ④